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41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관세법인 인적 설립요건 완화(이인선의원안)	2

I. 개요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41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3. 27.
- (3) 회 부 일 : 2025. 3.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관세법인 인적 설립요건 완화(이인선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사원 등(제17조의3) ○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u>5명</u>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함	☐ 인적 설립요건 완화 ○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u>3명</u>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함
☐ 사무소 등(제17조의8) ○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 분사무소 설치 제한 ○ <u>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은</u>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인선의원안 2025. 3. 27. 발의(의안번호 9418)

☐ 개정안은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당초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되, 분사무소 인적 설립요건은 현행과 같이 5명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 현행 「관세사법」 제17조¹⁾의3(사원 등)에서는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8(사무소 등)에서는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이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관세사법」 제17조(관세법인)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략)

2) 「관세사법」 제17조의3(사원 등)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요인으로 관세법인의 인적설립요건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관세법인과 개인사무소의 10년간 사무소 수를 살펴보면, 관세법인 증가율이 10.5%인 반면, 개인사무소 증가율은 13.9%인 것으로 나타남.

[관세법인과 개인사무소의 10년간 사무소 수(연말 기준)]

(단위 : 년, 명,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증가율
관세법인(A)	133	138	142	144	142	142	147	146	146	147	10.5
관세사 수(B)	1,072	1,111	1,141	1,172	1,154	1,228	1,287	1,287	1,318	1,336	24.6
(B/A)	8.1	8.1	8.0	8.1	8.1	8.6	8.8	8.8	9.0	9.1	12.3
개인사무소	553	546	562	579	579	601	603	633	625	630	13.9

주 1 :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기준,

주 2 : 합동, 통관취급법인은 제외

주 3 : 2025년은 5월 말 기준

주 4 : 증가율은 '16 대비 '25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자료 바탕으로 제작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 4. (생략)

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관세법인 설립 인적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관세법인 설립 인적요건은 기타 자격사의 법인설립 인적요건과의 형평성도 아울러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관세사법」³⁾에서는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기타 자격사의 법인 인적설립요건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는 2명 이상, 관세사·변리사·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는 5인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는 7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주요 자격사의 법인설립 인적요건]

구분	관세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설립 인적 요건	5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5명 이상	2명 이상	5명 이상
근거 규정	§17의3	§58의6	§6의12	§26	§16의5	§47의6	§7의3	§29 영§24

주 1 : 근거규정은 「관세사법」과 같이 각 자격사와 관련된 내용이 규율된 법률을 의미함.

공인노무사와 관련하여, 당초 「공인노무사법」에서는 인적요건이 5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8년 기존규제 50% 이상을 폐지한다는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 「98 기존규제 추가정비계획」을 수립⁴⁾ 후 후속조치로 인적요건을 2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노

3) 「관세사법」 제17조의13(준용규정)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법제처 홈페이지, 「1998년도 정부입법계획 추진과 성과」

동부 소관 공인노무사법 등 5개 법률 일괄정비 법률안」이 제출되어 1999년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된 바 있음⁵⁾.

변호사와 관련하여, 당초 「변호사법」에서는 인적요건이 1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워 설립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인적요건을 7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2008년 동 법이 개정된 바 있음.

공인회계사와 관련하여, 당초 「공인회계사법」에서는 인적요건이 2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인적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2001년 동 법이 개정되었고, 회계법인 설립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인적 요건을 7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2024년 동 법이 한 번 더 개정된 바 있음⁶⁾.

따라서, 기타 자격사의 설립 인적요건의 형평성과 요건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관세법인 설립 인적요건이 완화될 경우 소형 관세법인들이 난립하여 관세업무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5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한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는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됨.

6) 기타 자격사의 설립 인적요건은 현행법상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최근 구매대행업 등 관세 관련 신사업의 성장에 따라 전문성 있는 통관 대행, 관세신고 지원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⁷⁾.

한편, 2025년 9월 조세소위를 통해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의결하였고, 현재 관련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임.

문 의 처
02)6788-5158

7) 이기영, 「관세 납부 등 구매대행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세법상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 39, No.1, 2023. pp. 104-106.